

-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법률의 명칭·용어 변경사항 반영
 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, 벽면 이용 간판, 옥외광고심의위원회, 옥외광고사업
- 전자게시대 운영 사항 신설(안 제6조)
 -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 규제 완화
-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·심의 (안 제13조, 안 제14조)
 -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·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

-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마련(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, 제23조)
 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현수막 지정계시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
 -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
-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 등
 - 옥외광고업에서 옥외광고 사업으로 명칭변경, 법 개정에 따른 조항삭제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【붙임 1】
 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10조의 2
 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, 제16조, 제32조, 제33조
 - 「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
 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- 입법예고 : 2017. 9. 29. ~ 10. 19. (20일간)
 -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/ 【붙임 2】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 / 【붙임 3】

4. 검토의견

-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(2016. 7. 6.) 개정됨에 따라서 충청남도로 부터 표준안이 시군에 송부되고,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
- 법률의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, 전자계시대 운영 사항 신설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.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,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